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종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3. 제안이유

소방안전과 응급처치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 효율적인 구조활동으로 도민의 소중한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교육계획 수립, 교육실시, 교육내용, 강사자격, 교육장 운영과 수료증 발급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교육의 접근성 향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교육 관련 분석평가 등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교육시행 단체 및 기관에 대한 교육활동 장려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아. 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국가 등의 책무로 명시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는 화재·폭발·화생방사고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본 조례안은 관계법률의 범위 안에서, 도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소방안전’, ‘응급환자’, ‘응급처치’,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3조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교육계획 수립, 교육실시, 안전취약계층 집중교육 지원 내용, 교육내용, 강사자격, 교육장 운영과 수료증 발급,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는 교육 관련 분석평가 등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3조는 교육시행 단체 및 기관에 대한 교육활동 장려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는 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제공자(지방자치단체, 교육강사 등)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 및 전문성 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교육대상의 특성(성별·연령별·계층별) 및 상황(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수요자중심의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도민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조항을 구성한 것은 적절한 조치임.

- 각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7. 5.~'23. 7. 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주요 내용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정의’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관련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 및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에 관한 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과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근거한 ‘교육 강사의 자격’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차원의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교육수요자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근거한 시책 추진 시, 각종 화재 및 응급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